

정 오 표

- 이수진, 「지니 노동법」 (제4판), 경연

- 다행히 큰 오류는 없습니다만,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.
-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기나 기타 교재와 관련한 의견 등이 있으시다면 제게 자유롭게 공유 해주셔도 좋습니다(이메일 : theviolett@naver.com).
- 부족한 교재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😊

↓ 줄수에는 목차도 포함

쪽	줄	현행	수정
47	밑1	근기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3	근기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3
54	12	기단법(제8조 내지 제15조의2)	기단법(제8조 내지 제15조의3)
		파견법(제21조 및 제21조의2)	파견법(제21조 내지 제22조)
	13	고령자고용촉진법(제4조의4, 제4조의5)	고령자고용촉진법(제4조의4, 제4조의5, 제4조의9)
66	밑7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	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
69	11	청주지판 2021.4.13., 2021노438	청주지판 2022.4.13., 2021노438
	14		
	밑9		
83	각주 97	②주민등록번호	②생년월일,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
84	각주 98	특별연장근로 규정 등에 따른 인가·승인에 관한 서류	삭제(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 삭제, 2014.12.09.개정)
86	밑8	채용계획 등 에서	채용계획 등에서
91	밑2	연 5%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된다(민법 제379조).	연 20%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된다(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2호).
148	8	(근기법 제79조 내지 제85조)	(근기법 제78조 내지 제85조)
156	11	일률성을 갖추고 있다	일률성을 갖추고 있다
169	밑7	대판 2020.12.24., 선고 2019다293098).	대판 2020.12.24., 2019다293098).
170	밑 11	대판 1988.5.10. 선고 87도2098	대판 1988.5.10., 87도2098
174	11		단, 명단공개 중인 체불사업주가 위반한 경우, 반의사불벌죄 에서 제외된다(근기법 제109조제2항 단서).

190	6	국제노동기구(ILO)의 제1호(최초) 협약	국제노동기구(ILO)의 제1호(최초) 협약
208	밑2	통계청장	국가데이터처장
234	각주 396	대판 2023.11.16., 2022다231403·31410 등	대판 2023.11.16., 2022다231403·231410
245	7	90일(한 번에	90일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90일, 한 번에
	9	이상이 되어야 한다(근기법 제74조 제1항)	이상이 되어야 하고, 미숙아의 범위, 휴가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(근기법 제74조 제1항).
251	각주 422	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	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. 1.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.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
269	밑 13	대판 1994.12.13., 선고 93누23275	대판 1994.12.13., 93누23275
	밑1		
273	밑 10	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	을 초과할 수 없다.
350	각주 539	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	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
378	13	노동조합이 사용사업주가 합의하여	노동조합이 사용사업주와 합의하여
415	밑3	산업안전보건법(제173조, 제38조)	산업안전보건법(제167조 제1항, 173조, 제38조)
421	6	고용보험법은 제1종의	고용보험법은 제1조의
441	8	여기서 가·나·라목은	여기서 가·나목은 (라목은 2025.9.9. 개정으로 삭제)
464	각주 43	7.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	7. 2005.8.4. 삭제
468	7	①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시간면제자(유급전임자)일 수도 있고, 사용자로부터 급여를	①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시간면제자(유급전임자)일 수도 있고, 사용자로부터 급여를
471	밑9	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판	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판
485	밑9	(노조법 제16조 제2항).	(노조법 제16조 제4항).
505	2	① 교섭요구 사실의	① 교섭요구 사실의
513	밑 11	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이 적법한 것이라면	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이 적법한 것이라면
549	각주	5. 화약·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·저장하는 장소	5. 화약·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·제2호의2·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 유해성물질·인체만성유해성물질·생태유해성물질을 보관

			· 저장하는 장소
553	밑 10	해제 · 해제	해제 · 해지
571	밑 10	노동조합	노동조합
574	밑3	확장적용될	확장 적용될
596	4	사용자의 방해행위	사용자의 방해행위